

제821호

무주 공보

2026. 7. 29.(수)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발 행 : 무 주 군

편 집 : 기획조정실 (☎ 063-320-2226)

조 례

- 「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

공 고

- 2025년 월현, 심곡, 배방1·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..... 10

무주군 공고 제2026-827호

「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」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29일

무 주 군 수

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의 설치 및 중장기 운영 계획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상위 법령에 맞춰 휴관일 및 위탁 규정을 정비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 변경

- 기존 ‘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’에서 ‘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’로 명칭을 변경함

나. 목적 및 설치 규정 정비 (제1조, 제2조)

- 조례의 목적에 ‘설치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, 테마공원의 설치 목적과 위치 관련 자구(‘실증시험 지원을’ → ‘실증시험을 지원하기’ 등)를 명확하게 정비함

다. 종합운영계획 수립 주기 명시 (제4조)

-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기존에 없던 ‘5년마다’라는 구체적인 수립 주기를 신설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임

라. 운영 및 이용 관련 규정 정비 (제5조, 제6조, 제7조)

- 이용시간 조정 (제5조제2항): 조문 내 ‘조정시간’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‘이용시간’으로 변경함.
- 휴관일 기준 명확화 (제6조제2호): 휴관일 지정 기준을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명확히 정함

- 용어 순화(제6조제3호) : 행정 용어 순화에 따라 ‘홈페이지’ 를 ‘누리집’ 으로 변경
 - 자구 수정 (제7조) : 문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‘대해’ 를 ‘대하여’ 로 수정
- 마. 조문 제목 및 자구 간소화 (제9조 ~ 제13조)
- 피인용 조문들의 제목에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‘테마공원’ 또는 ‘공원시설’ 등의 단어를 삭제하여 직관적으로 명료화함
- 바. 위탁 및 안전 관리 강화 (제15조, 제16조)
- 사무위탁 근거 구체화 (제15조) : 「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」를 따르도록 후단 규정을 신설함.
 - 보험 가입 의무화 (제16조) : ‘가입할 수 있다’ (임의사항)에서 ‘가입하여야 한다’ (의무사항)로 변경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. 8. 18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주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그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 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우)55515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6
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스마트팜팀
- 전자우편: jang2112@korea.kr
- 팩스: 063-320-2879

4. 그 밖의 사항

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스마트팜팀(063-320-2882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의견서

- 조례명: 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
- 성명(단체명): (서명 또는 날인)
- 주소:
- 전화번호:

개정안 내용	찬성 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무주군수 귀하

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”를 “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운영 및 관리”를 “설치 및 운영·관리”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의 설치 및 위치)”를 “(설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무주군 지역자원”을 “무주군의 지역자원”으로, “실증시험 지원을”을 “실증시험을 지원하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테마공원의 위치는”을 “테마공원은”으로, “일원으로 한다”를 “일원에 조성한다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테마공원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)”을 “(종합운영계획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립하여”를 “5년마다 수립하여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조정시간”을 “이용시간”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테마공원의 휴관일)”을 “(휴관일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호 후단 중 “홈페이지”를 “누리집”으로 한다.

2.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
제7조의 제목 “(테마공원 입장의 제한 및 퇴장)”을 “(입장 제한 및 퇴장)”으

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해”를 “대하여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공원시설의 이용신청)”을 “(이용신청)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공원시설의 이용제한)”을 “(이용제한)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공원시설의 이용료)”를 “(이용료)”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“(공원시설 이용료의 면제)”를 “(이용료의 면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군”을 “무주군”으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공원시설 이용료의 반환)”을 “(이용료의 반환)”으로 한다.

제1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」에 따른다.

제16조 중 “가입할 수 있다”를 “가입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의 <u>운영 및 관리</u>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설치 및 운영 · 관리</u> ----- -----.
제2조(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의 설치 및 위치) ① 무주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무주군 <u>지역</u> <u>자원을</u> 이용하여 도농 교류 촉진과 쾌적한 자연 휴식공간을 제공하고, 사과 등 지역 특산물의 실증시험 <u>지원</u> 을 위하여 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(이하 “테마공원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	제2조(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의 설치 등) ① ----- ----- <u>무주군의 지역</u> <u>자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원하기</u> ----- ----- -----.
② <u>테마공원의 위치</u> 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증산로 89-41 일원으로 한다.	② <u>테마공원은</u> ----- ----- ----- <u>일원에 조성한다.</u>
제4조(테마공원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) 군수는 테마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테마공원 종합운영계획을 <u>수립하여</u> 시행한다.	제4조(종합운영계획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5년마다 수립하여</u>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제5조(테마공원의 이용시간) ① (생략)	제5조(테마공원의 이용시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	② -----

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.

제6조(테마공원의 휴관일) 테마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략)

2.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휴일

3. 그 밖에 군수가 공원시설의 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. 이 경우 군수는 휴관 기간과 사유를 해당 휴관일 7일 전까지 무주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.

제7조(테마공원 입장의 제한 및 퇴장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테마공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제9조(공원시설의 이용신청) (생략)

제10조(공원시설의 이용제한) (생략)

제11조(공원시설의 이용료) (생략)

제12조(공원시설 이용료의 면제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

----- 이용시간-----
-----.

제6조(휴관일)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

3. -----

-----.

----- 누리집-----
-----.

제7조(입장의 제한 및 퇴장) -----

----- 대하여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이용신청)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이용제한)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이용료)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이용료의 면제) --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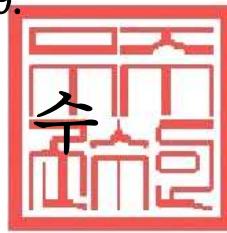
공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군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사 제13조(공원시설 이용료의 반환) (생략) 제15조(민간위탁) (생략) <u><신설></u> 제16조(보험가입) 군수는 테마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이용자의 사망 등 인적·물적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	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무주군</u>----- 제13조(이용료의 반환) (현행과 같음) 제15조(민간위탁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「<u>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</u>」에 따른다. 제16조(보험가입) ----- ----- ----- ----- 가입하여야 한다.
--	---

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월현, 심곡, 배방1·2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7. 29.

무 주 군 수



1. 사 업 명: 2025년 월현, 심곡, 배방1·2지구 지적재조사사업
2. 사업시행자: 무주군수
3.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
 - 월현지구 296필 / 156,803.2㎡
 - 심곡지구 228필 / 144,915.5㎡
 - 배방1지구 253필 / 112,357.8㎡
 - 배방2지구 365필 / 163,757.6㎡
4. 지적확정조서: 붙임과 같음
5. 공람기간: 2026. 7. 29. ~ 2026. 8. 12.(14일간)
6. 공람장소: 무주군 민원봉사과
7. 공람 비치서류
 - 가.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
 - 나. 지상경계점등록부
 - 다.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
8. 문의처: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(063-320-2724,2725,2720)